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인 증인·참고인의 안면 가림 금지〉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18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 · 박정현 · 정을호 · 김문수 · 채현일 · 조정식
이상식 · 황명선 · 남인순 · 서영교 · 차지호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 의안번호 : 75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전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 참고인 · 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인 증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나와, 위원장이 안면을 노출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

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동의 없이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⑧ (생략) <신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9조제2항¹⁾은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1)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증인의 보호)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고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증인·참고인의 방송·보도 금지 또는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증인 또는 참고인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상의 비공개, 증인석 가림막 설치, 음성 송출 시 음성 변조, 언론 취재 및 촬영 제한, 회의 비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²⁾

그런데, 방송·보도 금지 또는 회의 비공개 요구의 적용 요건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출석한 공무원에게 위원장이 마스크와 안경을 벗도록 여러 차례 명령하였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장을 명령한 사례가 발생하였음.³⁾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동의 없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본회의나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2)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4, pp.877~880

3) 제22대국회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6. 19.) 및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7. 11.)

도모하고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안면 가림 사례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에서는 증인·참고인의 증언·진술 시의 행동·복장 등에 관한 포괄적·일반적인 규범이나 특정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⁴⁾

개정안과 같이 안면 가림이라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행위규범을 법정화하는 것이 현행 국회관계법 규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안면 가림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참고로, 방청인에 대하여 「국회법」에서는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한 포괄적 규범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방청규칙」에서는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국회방청규칙」 제1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2.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3. 음식 또는 껌연을 하지 못한다.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5.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6.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제16조(동전)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⁵⁾에 따른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어, 안면 가림 의무 위반행위가 국회모욕의 죄의 구성요건인 ‘그 밖의 모욕⁶⁾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안면을 가리는 행위가 모욕적인 언행의 유형에 명백히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국회모욕의 죄의 처벌 대상 위반행위는 ① 폭행, ② 협박, ③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형량의 균형성,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안면 가림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5)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참고로, 「형법」 제138조에 따른 국회의원회의장 모욕죄의 ‘모욕’은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함(신동운, 「형법각론」(제3판), 법문사(2023), p.209).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의원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원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